

# 편의시설 및 UD환경에 대한 이해

# 목 차

---

I. 개요

II. 지체장애인의 행동 특성

III. 시각장애인의 행동 특성

IV. 청각장애인의 행동 특성

V. 장애인등편의법의 이해

# I. 개요

## ● 장애물없는 세상 만들기 관련제도의 변화

1998년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 시설 공급자가 최소한의 법적 규정에 의한 수준으로 시설물을 제공
- 이용자가 실제 이용시 불편하거나 차별적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면 민원을 제기

2008년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편의증진법에 의해 제공되는 최소한의 시설이용수준에 대해 차별적 요인이 있다고 판단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접수
-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및 결정 후 시정권고로 권리구제 조치
- 불이행시 시정명령, 이후 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3,000만원이하) 부과

2008년

###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제 도입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라 모든 시설이용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인증제도 도입(2007년)
- 2008년 이후 BF인증제 본격시행

2015년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2015. 1. 2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BF인증 취득 의무화) (시행일 2015. 7. 29)

공급자  
중심의 편의시설  
설치에서

소비자  
중심의 BF시설로  
변화



## ● 장애물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 인증의 이해

### Barrier Free 환경이란?

- 누구나 이용 가능한 환경
- 누가 이용하여도 불편이 없는 환경

- 처음부터 시설물에 장애물을 만들지 않는 방법
- 기존 시설물에 존재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방법



**장애물 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 인증**



# ● 장애물없는 세상 만들기 관련제도의 변화

2015년  
이후

##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제 의 지속적 발전

- 공공시설의 BF화로 시설이용수준의 지속적 증가
- 민간시설의 BF화를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 필요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장애인구  
2014년말 기준 273만명(전체인구의 5.59%)

2026년  
이후

## 초고령화된 사회구성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환경 변화 필요

- 급격하게 고령화되는 사회  
2000년 7.2% : 고령화 사회 진입  
2018년 14.3%로 예상 : 고령 사회  
2026년 20.8%로 예상 : 초고령 사회
-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까지도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환경으로의 변화 필요

구분	고령화 진행속도			증가소요 연수	
	7%(고령화)	14%(고령)	20%(초고령)	7→14%	14→20%
프랑스	1864	1979	2019	115	40
미국	1942	2014	2030	72	16
이태리	1927	1988	2008	61	20
독일	1932	1972	2010	40	38
일본	1970	1994	2006	24	12
한국	2000	2018	2026	18	8

물리적 환경의  
BF화 에서



누구나 차별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다양한 사회환경  
의 UD화로 변화  
필요

## ● 관련법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편의증진법)  
(1998년 4월 11일 시행) - 보건복지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하 교통약자법)  
(2006. 1. 26 시행) - 국토해양부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이하 장차법)  
(2008년 4월11일 시행) - 보건복지부

## ●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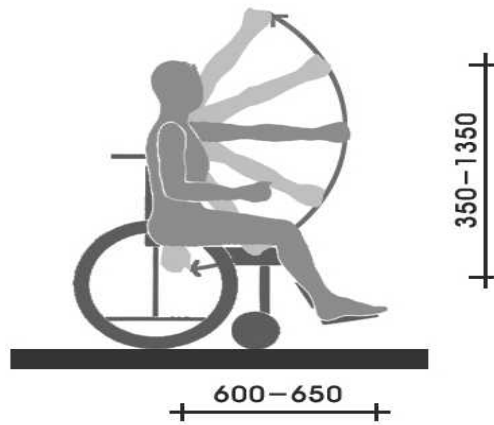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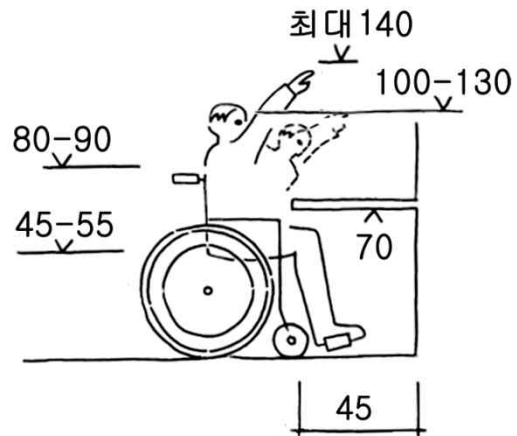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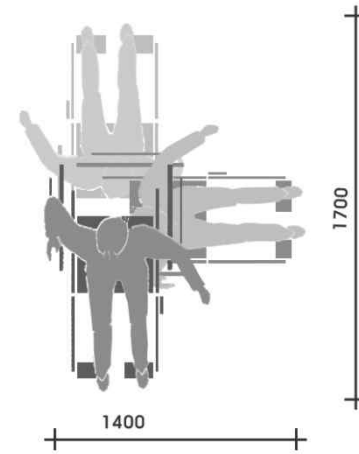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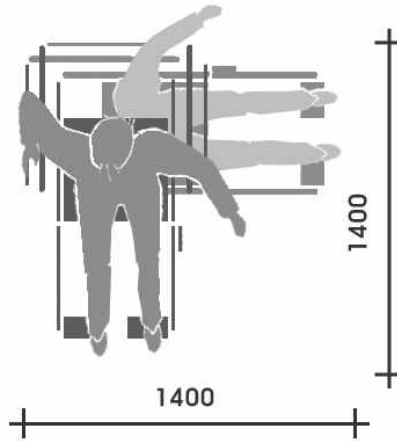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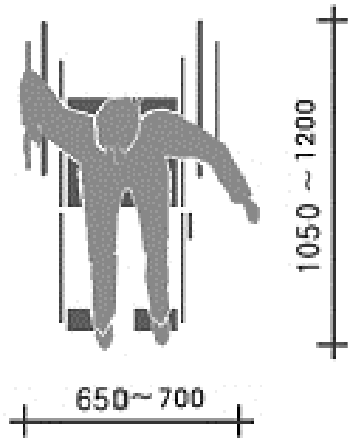
편의시설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아동, 환자, 짐을 든 사람, 유모차를 미는 사람, 자전거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불편 없이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

## Ⅱ. 지체장애인의 행동 특성 이해

### ● 활동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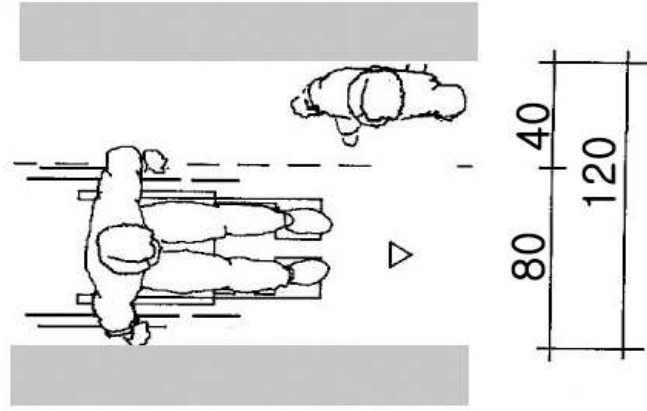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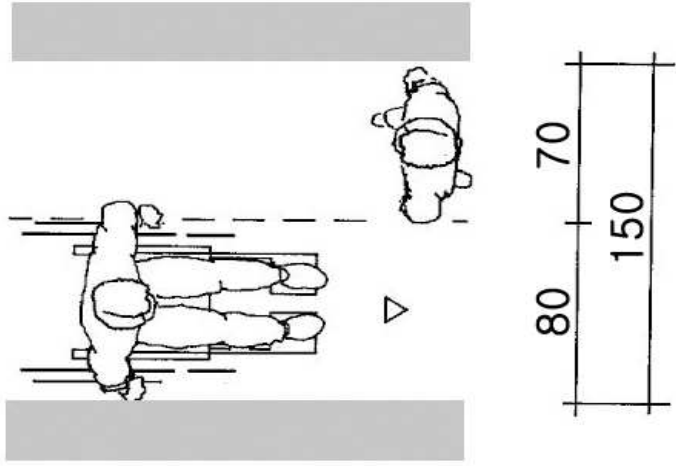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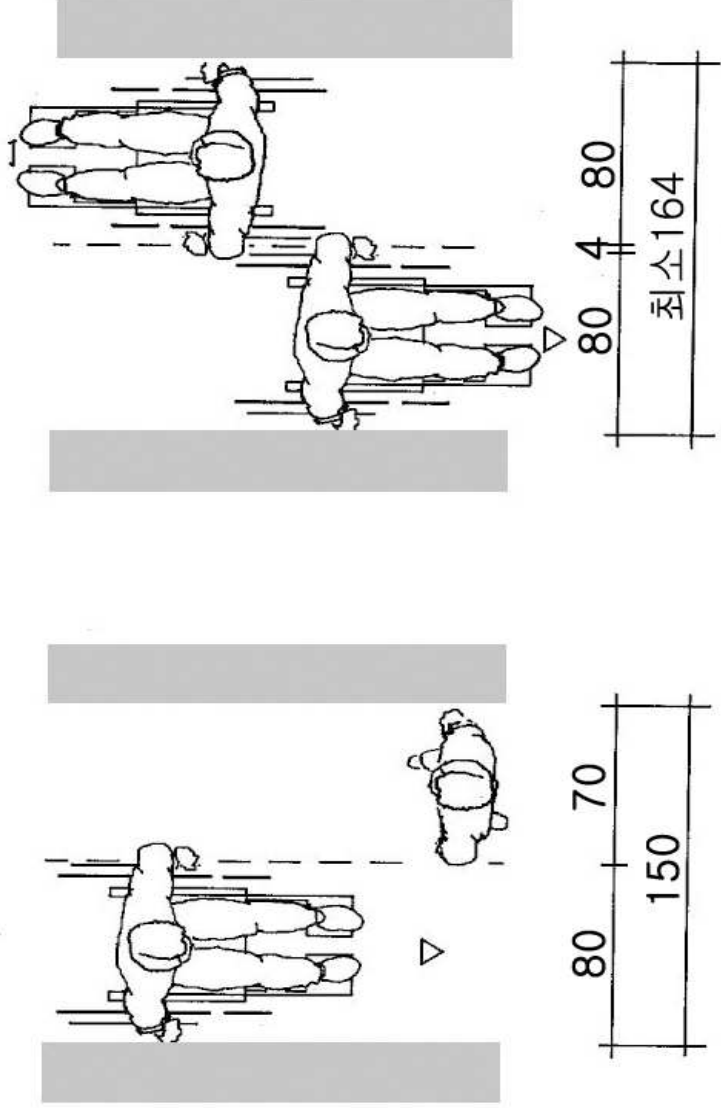
- 계단 및 경사면 등의 수직이동이 힘들며 약간의 요철과 단차에도 통행이 곤란함
- 이동하거나 회전하는데 많은 공간이 필요하며 급히 방향을 전환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높은 곳과 낮은 곳, 전후 좌우 방향으로 손이 닿는 범위가 한정됨
- 이동 시에는 양손 사용이 불가능하며 이동 거리의 한계가 있음
- 휠체어에서 다른 것에 옮겨 앉을 때의 동작이 힘들
- 보행속도가 느리며 보행능력이 약하여 넘어지기 쉬움
- 노면이 미끄러운 재질일 경우 이용하기가 곤란하고 위험함

## ● 활동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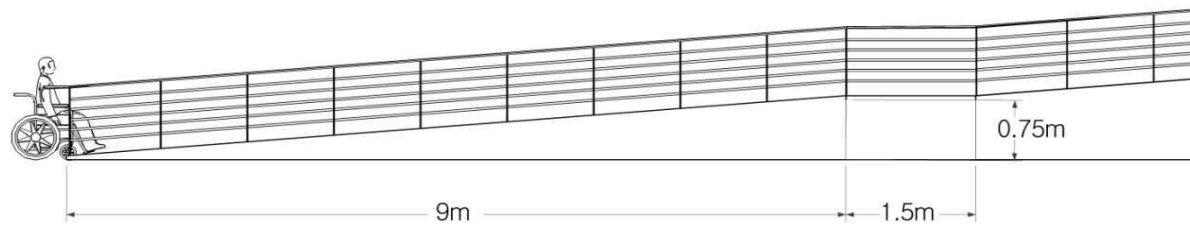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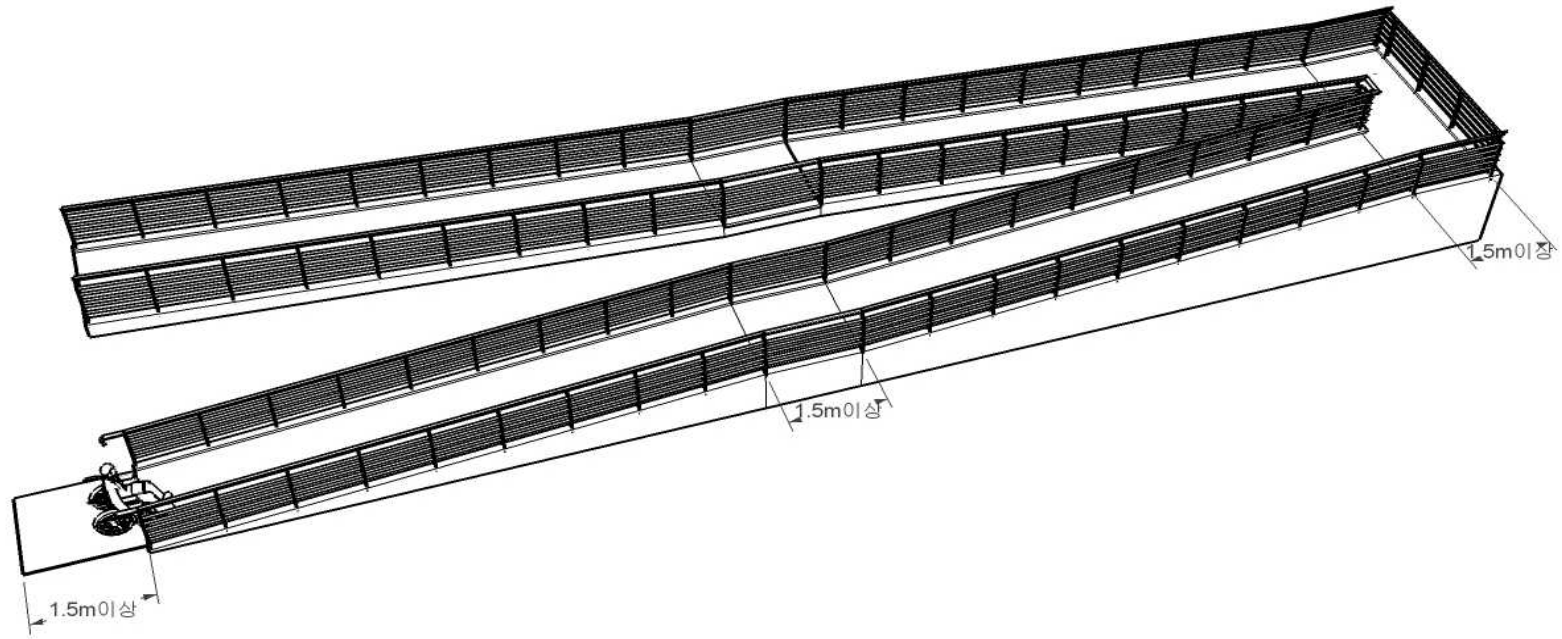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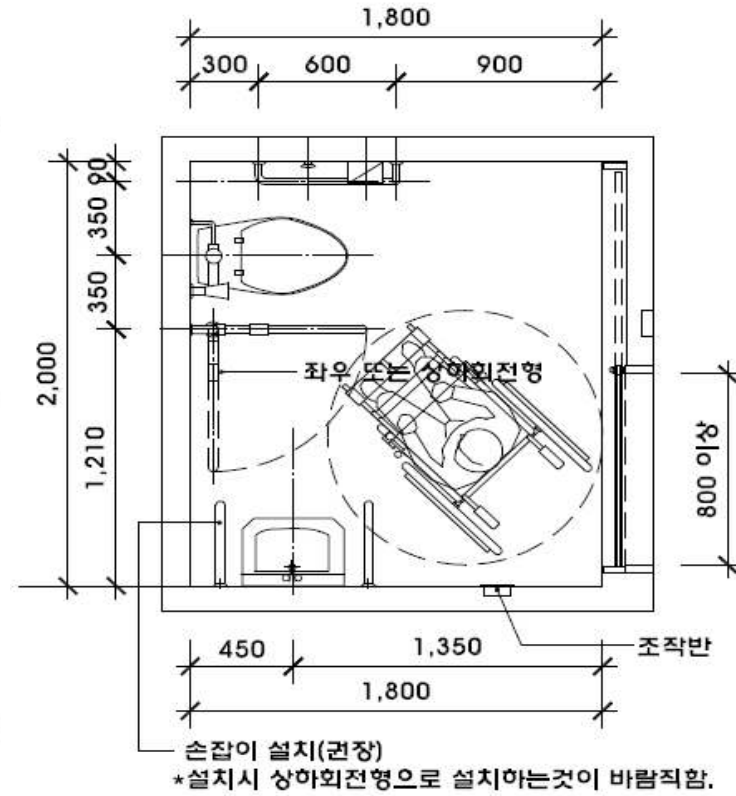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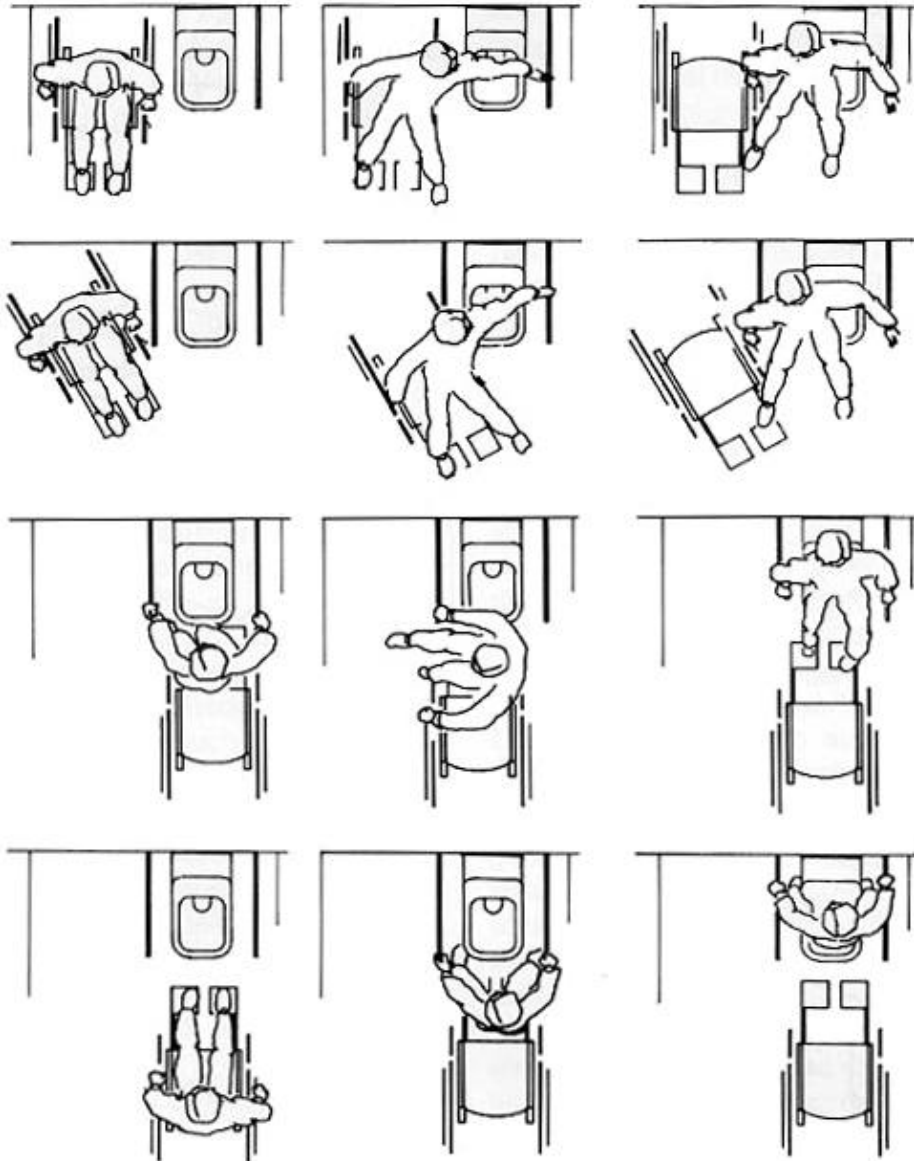
## ● 이동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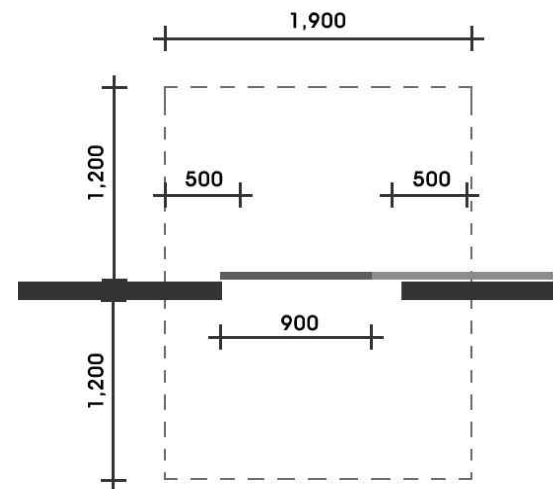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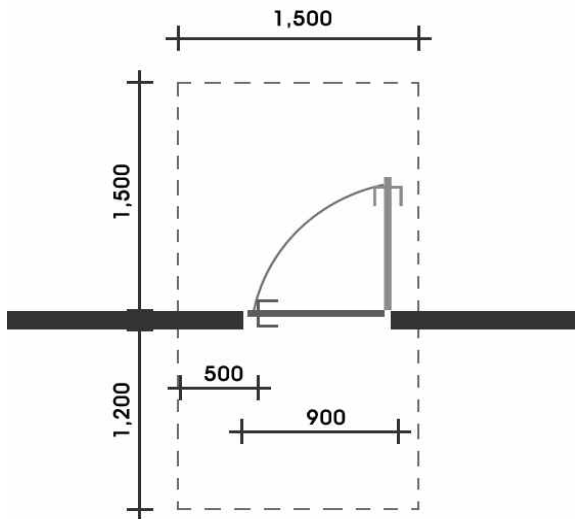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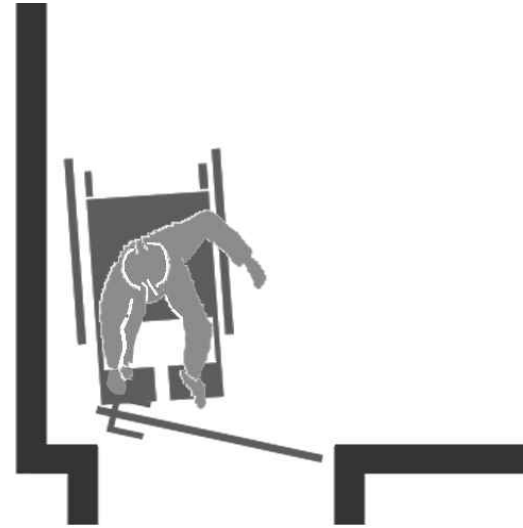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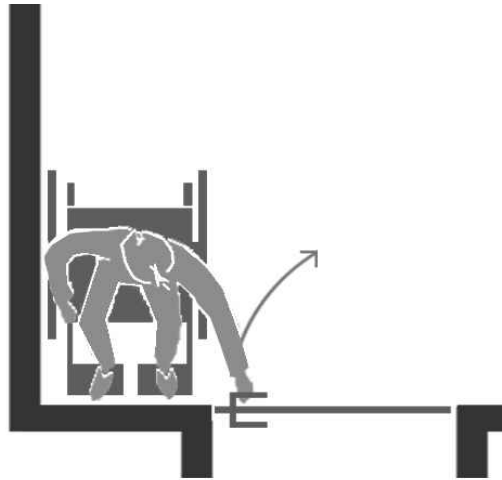
● 경사로



## ● 화장실



## ● 각 실의 출입문



## Ⅲ. 시각장애인의 행동 특성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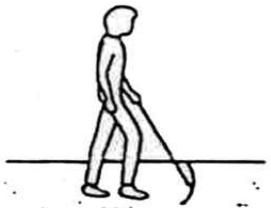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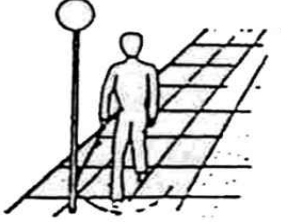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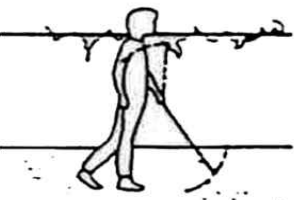


### ● 전맹인의 인지

#### ● 바닥의 점자블록 및 점자로 인지

바닥의 점자블록과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점자표지판으로 인지

#### ● 음성 및 음향신호로 인지

시각장애인은 눈으로 보는데 제한적이므로 소리를 듣고 인지하는데 일정한 음인 음향신호나 사람의 목소리와 같은 음성신호로 인지

		
1. 지팡이로 진행전방을 두드리며 걷는다.	2. 지팡이를 벽면에 대고서 걷는다.	3. 지팡이를 상하로 움직여 높이를 판단한다.
		
4. 수직봉을 보조로 하여 전면 돌출물을 판단한다.	5. 바닥의 돌출물을 알지 못한다.	6.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지팡이 끝을 다음끝부분에 대서판단.

## ● 약시인의 인지

### ● 색상으로 인지

약시인은 대부분 색상으로 인지하므로 명도가 높아 주변의 색상과 쉽게 구분되는 황색을 주로 약시 보행인의 인지라인으로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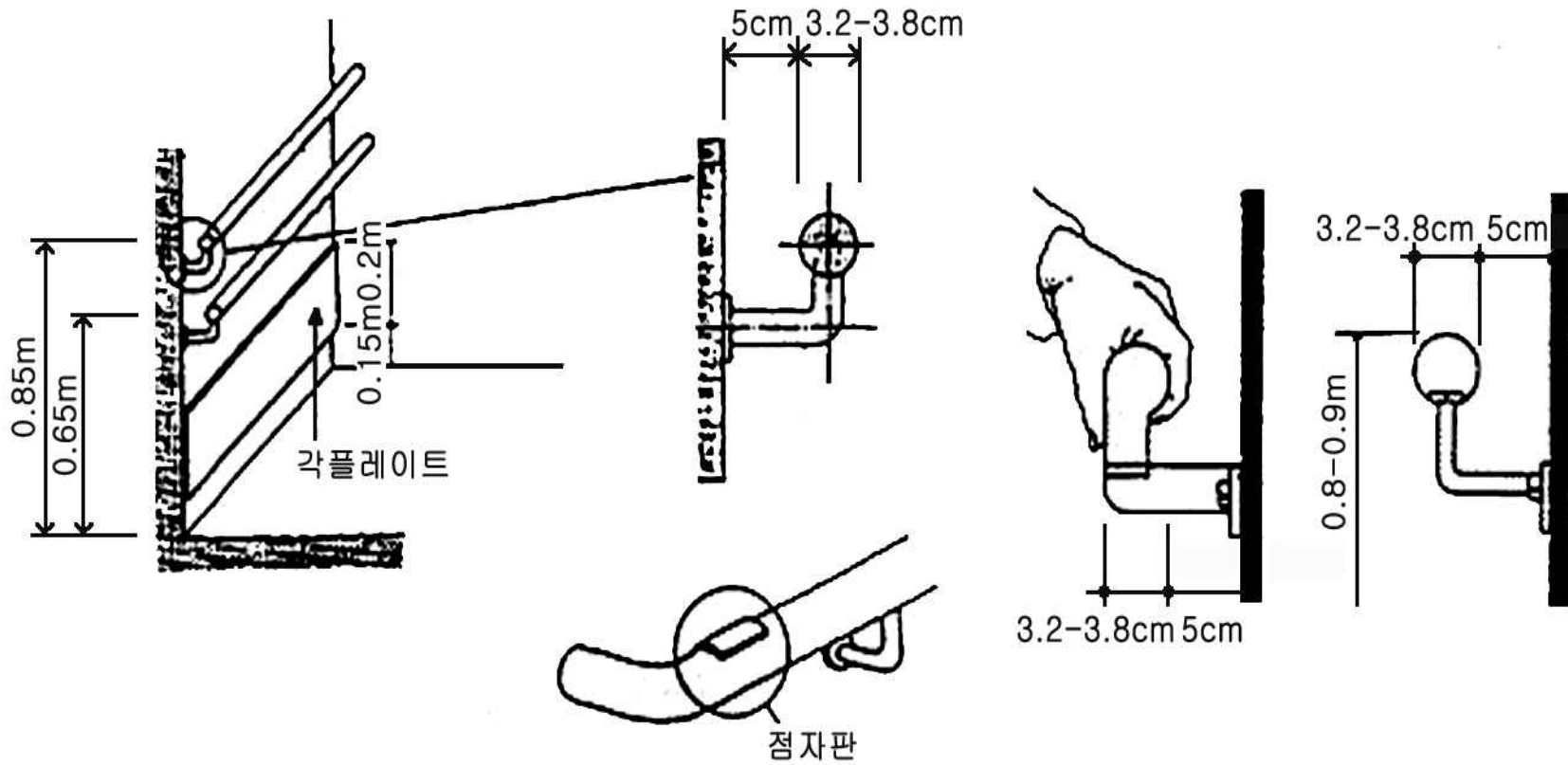
### ● 바닥의 점자블록 및 점자로 인지

약시인 뿐 아니라 전맹인 모두 바닥의 점자블록과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점자표지판으로 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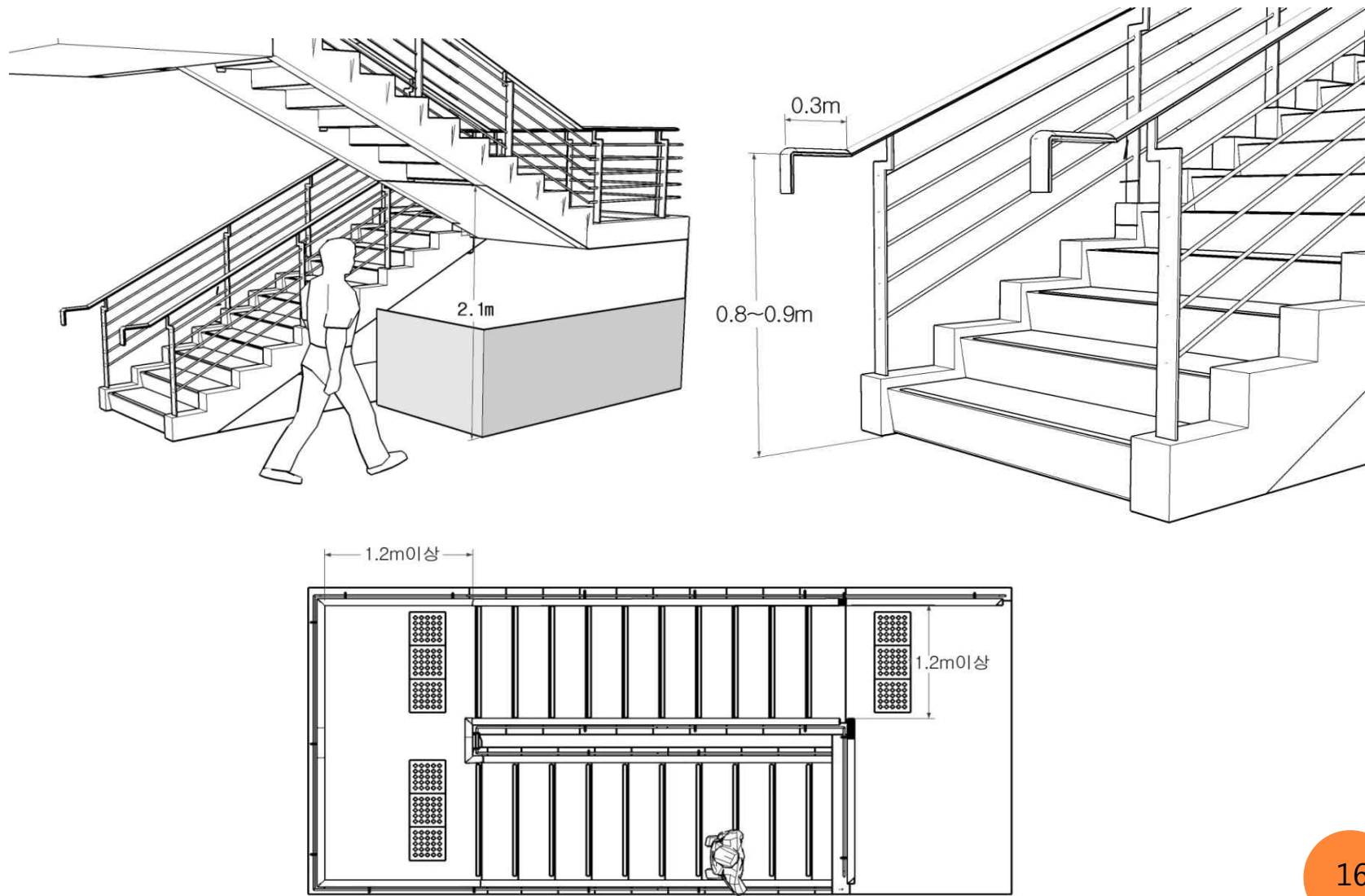
### ● 음성 및 음향신호로 인지

시각장애인은 눈으로 보는데 제한적이므로 소리를 듣고 인지하는데 일정한 음인 음향신호나 사람의 목소리와 같은 음성신호로 인지

● 손잡이 (핸드레일)



● 계단 (수직이동의 수단)





## IV. 청각장애인의 행동 특성 이해

---

### ● 전농인의 인지

#### ● 수화통역으로 인지

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으므로 수화를 통하여 의사소통

#### ● 문자로 인지

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으므로 문자로 의사소통

#### ● 빛 등으로 인지

소리를 빛 등으로 전환하여 인지

## ● 난청인의 인지

### ● 증폭된 소리로 인지

소리를 일부 들을 수 있으나 너무 작은 소리나 너무 큰 소리 등 다양한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경우에 소리를 증폭하여 인지

### ● 골전도 등으로 인지

소리를 증폭하는 것으로는 소리를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 두개골을 통해 소리를 전도하여 인지

### ● 수화통역으로 인지

소리를 잘 들을 수 없는 경우에 일부 수화를 통하여 의사소통

### ● 문자로 인지

소리를 잘 들을 수 없는 경우에 문자로 의사소통

### ● 빛 등으로 인지

소리를 빛 등으로 전환하여 인지

# V. 편의증진법의 이해

## ● 편의증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구성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제4조(접근권)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7조(대상시설)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9조(시설주등의 의무) 제9조의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제9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제10조(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10조의3(인증의 유효기간) 제10조의4(인증의 표시) 제10조의5(인증의 취소) 제10조의6(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제10조의7(청문) 제11조(실태조사) 제12조(설치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고) 제12조의2(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 등) 제13조(설치의 지원) 제14조(연구개발의 촉진 등) 제12조의2(교육 실시) 제15조(적용의 완화) 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제공) 제16조의2(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 제18조 ~ 제21조 삭제 제22조(자료제출 요구와 검사) 제23조(시정명령등) 제24조(이행강제금) 제25조(벌칙) 제26조(양벌규정) 제27조(과태료) 제28조(제24조로 이동) 제29조(제9조의3 이동)	제1조(목적) 제2조(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제3조(대상시설)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제5조(대상시설의 변경) 제5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 제6조(설치계획 및 시행실적의 제출) 제6조의2(편의증진심의회의 구성) 제6조의3(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의4(회의) 제6조의5(수당 및 여비) 제6조의6(심의회의 운영세칙) 제7조(적용의 완화) 제7조의2(편의제공의 대상시설) 제7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제8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제9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제10조 ~ 제11조 삭제 제12조(시정명령) 제12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 제12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4조(제12조의2로 이동) 제15조 삭제	제1조(목적)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제3조(안내표시기준) 제3조의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등) 제3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제4조(실태조사의 실시 시기등) 제5조(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 제6조(비치용품의 종류등) 제6조의2(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제6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현황의 기록·관리) 제7조(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징수 절차) 제8조(규제의 재검토)

# ● 편의증진법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관련근거 시행령 제3조 관련 별표1)

## 1. 공원

###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슈퍼마켓·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 이용원·미용원·목욕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4) 대피소

(5) 공중화장실

(6)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을 포함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7) 지역아동센터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1) 일반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안마시술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다. 문화 및 집회시설

(1)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집회장(예식장·공회장·회의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주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4)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5)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 편의증진법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관련근거 시행령 제3조 관련 별표1)

### 라.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마. 판매시설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바. 의료시설

(1)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2)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3) 삭제 <2012.8.22>

사.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학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2)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직업훈련소·학원(자동차학원과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도서관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아. 노유자시설

(1) 아동관련 시설(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3)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 자. 수련시설

(1)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 집·유스호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차. 운동시설(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1) 체육관

(2)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로울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 등의 운동장을 말한다)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 카. 업무시설

(1) 공공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일반업무시설로서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이고, 분양 또는 임대하는 구획에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일반업무시설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 타. 숙박시설

(1) 일반숙박시설(호텔 및 여관으로서 객실수가 30실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2)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 ● 편의증진법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관련근거 시행령 제3조 관련 별표1]

### 파.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 하. 자동차관련시설

(1) 주차장

(2) 운전학원

### 거. 교정시설

교도소 및 구치소

### 너. 방송통신시설

방송국·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더. 묘지관련시설

(1) 화장시설

(2)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러. 관광휴게시설

(1) 야외음악당·야외극장·어린이회관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휴게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머.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3. 공동주택

###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

다. 다세대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30인 이상이 기숙하는 시설에 한한다.

## 4. 통신시설

### 가. 공중전화

### 나. 우체통

# ● 장애물없는 세상 만들기 관련 법적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신설(2015. 1. 28 신설)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시설의 범위) [별표2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시설(2015. 7. 24 신설)

대상 시설		비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	수퍼마켓·일용품 등의 소매점, 이용원·미용원·목욕장	1000㎡ 미만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대피소	
	공중화장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안마시술소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및 관람장	
	집회장	
	전시장	
	동·식물원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을 말한다)	
판매시설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	
의료시설	병원·격리병원	1000㎡ 이상
교육연구시설	학교(특수학교를 포함하며, 유치원은 제외한다)	
	유치원	
	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도서관	

대상 시설		비고
노유자시설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경로당을 포함한다)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1000㎡ 이상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500㎡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	1000㎡ 이상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으로서 객실수가 30실 이상인 시설)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	
공 장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운전학원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교정시설	교도소·구치소	
묘지관련시설	화장시설,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휴게소	
장례식장		

# ● 편의증진법의 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관련근거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2)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편의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비고	
	주출입구 접근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욕실	샤워실 · 탈의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객실 · 침실	관람석 · 열람석	접수대 · 작업대		대표소 · 판매기 · 음료대
수퍼마켓 · 일용품 등의 소매점, 이용원 · 미용원 · 목욕장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제 1 종 근린생활시설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공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의무		
대피소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공중화장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 ● 장애인편의시설의 종류

### 1. 매개시설

주출입구접근로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

### 2. 내부시설

출입구(문) / 복도 / 계단 또는 승강기

### 3. 위생시설

화장실 (대변기,소변기,세면대) / 욕실  
/ 샤워실·탈의실

### 4. 안내시설

점자블록 / 유도 및 안내설비 / 경보 및 피난설비

### 5. 기타시설

객실·침실 / 관람석·열람석 /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 임산부등을 위한 휴게시설

**감사합니다.**

